

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

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-77조제14호라목 중 “유지할 것. (이 경우 제7-16조제5항을 준용한다)”를 “유지할 것”으로 한다.

제4-93조제20호라목 중 “유지할 것. (이 경우 제7-16조제5항을 준용한다)”를 “유지할 것”으로 한다.

제7-15조제4항제1호 중 “제7-36조제1항제1호에”를 “영 제241조제2항제4호가목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120일”을 “60일”로 한다.

2. 영 제241조제2항제4호나목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중 집합투자규약에 장부가격으로 평가하지 않음을 명시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: 120일
제7-1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영 제241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제4항제2호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와 제4항제3호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영 제241조제2항제4호나목의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.

제7-36조제1항제2호 중 “자산총액의”를 “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(이하 이 조에서 “안정적 자산 비중”이라 한다)이”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의”를 “다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에의”로 하며, 같은 호 마목의 “잔존만기 90일 이내의 어음”을 “단기사채 또는 어음(기업어음증권을 포함한다.)”으로 하

고, 같은 호 사목의 “매수”를 “매수. 다만, 환매조건부 매수의 대상증권이 국채증권,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이며 최소증거금률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제7-19조제3항 제2호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”로 하며,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, 영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또는 단기사채
제7-36조제1항에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영 제241조제2항제4호나목의 집합투자기구 중 집합투자규약에 안정적 자산비중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제2호 각 목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지 않음을 명시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. 다만, 안정적 자산 비중이 3영업일 연속 100분의 30 이하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.

4.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

가. 집합투자규약에 위기상황에서의 장부가격 평가 중단을 포함하여 선환매 유인 관리 조치를 기재한 경우

나. 직전 10영업일 이내에 일시적·일회성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이 발생한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경과조치) 2023년 3월 31일까지 이

규정 시행 전에 설정 · 설립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7-36조제1항제3호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기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) 2023년 3월 31일까지 이 규정 시행 전에 설정 · 설립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중 안정적 자산 비중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제7-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자산을 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제7-36조제1항제3호본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-77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영 제99조제4항제7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	제4-77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-----.
1. ~ 13. (생 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
14. 수시입출방식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	14. -----.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라. 투자일임재산을 잔존만기 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유지 할 것. (<u>이 경우 제7-16조 제5항을 준용한다</u>)	라. -----. ----. <삭 제>
(1) · (2) (생 략)	(1) · (2) (현행과 같음)
15. ~ 19. (생 략)	15. ~ 19. (현행과 같음)
제4-93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영 제109조제3항제10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	제4-93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-----.
1. ~ 19. (생 략)	1. ~ 19. (현행과 같음)

20. 수시입출방식으로 신탁계약
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
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
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
가. ~ 다. (생 략)

라. 신탁재산을 잔존만기별로
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에
해당하는 비율을 유지할
것. (이 경우 제7-16조제5
항을 준용한다)

(1) · (2) (생 략)

21. ~ 32. (생 략)

제7-15조(환매조건부매도의 범위)

등) ① ~ ③ (생 략)

④ 영 제241조제2항제3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"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제7-36조제1항제1호에 따른

— — — — — • — — —

2. 제7-36조제1항제2호에 따른
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: 60일

3. 그 밖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
구 : 120일

<신 설>

20. -----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라. -----

-----.

(1) · (2) (현행과 같음)

21. ~ 32. (현행과 같음)

제7-15조(환매조건부매도의 범위)

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(4) _____

_____ .

1. 영 제241조제2항제4호가목에

2. 영 제241조 제2항 제4호 나목의
집합투자기구 중 집합투자규
약에 장부가격으로 평가하지
않음을 명시한 단기금 용집합
투자기구 : 120일

3. -----
-- : 60일

집합투자기구와 제4항제3호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영 제241조제2항제4호나목의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.

제7-36조(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)

① 영 제260조제3항 전단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"란 다음 각 호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

1. (생략)

2. 영 제241조제2항제4호나목의 집합투자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산에 대한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

가. ~ 다. (생략)

라. 영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

마.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잔존만기 90일 이내의 어음

제7-36조(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)

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---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(이하 이 조에서 "안정적 자산 비중"이라 한다)이 --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영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-----

마.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단기사채 또는 어음(기업어음증권을 포함한다.)

바. 제7-1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기대출 또는 환매조건부 매수 <단서 신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바. 제7-1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기대출 또는 환매조건부 매수. 다만, 환매조건부 매수의 대상증권이 국채증권,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이며 최소증거금률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제7-19조제3항제2호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사.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, 영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또는 단기사채

3. 영 제241조제2항제4호나목의 집합투자기구 중 집합투자규약에 안정적 자산 비중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제2호 각 목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지 않음을 명시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. 다만, 안정적 자산 비중이 3영업일 연속 100분의 30 이하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.

4.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단기금융

	<p><u>집합투자기구</u></p> <p>가. <u>집합투자규약에 위기상황</u> <u>에서의 장부가격 평가 중단을</u> <u>포함하여 선환매유인 관리 조</u> <u>치를 기재한 경우</u></p> <p>나. <u>직전 10영업일 이내에 일</u> <u>시적·일회성 대량 환매대금</u> <u>의 지급이 발생한 경우</u></p>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